#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(서동용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1205

발의연월일: 2021. 6. 30.

발 의 자:서동용・김철민・권인숙

유기홍 • 인재근 • 김정호

이동주・조승래・전혜숙

안민석·최혜영 의원

(119]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교육활동 편의를 위하여 각종 학습보조기기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물적 지원, 교육보조인력 배 치 등의 인적 지원, 취학편의, 정보접근 지원 및 각종 편의시설 설치 지원 등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 정보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로 인하여 대학 내에서 원격 영상수업을 비롯한 온라인 강의가 확대되고 있으나 교육 중 활용되는 각종 영상물에 화면 해설, 자막 등 장애학생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정보접근의 지원은 부족한 실정임.

이에 대학의 장은 수업 중 활용하는 영상물에 장애학생을 위한 화면해설 또는 폐쇄자막 등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, 장애학생의 학습지원 등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학칙에 규정하도록 하여 장애 대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려는 것임(안 제31조 및 제32조).

#### 법률 제 호

#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31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대학의 장은 제1항제4호에 따른 정보접근 지원을 위하여 수업 중 활용하는 영상물에 장애학생을 위한 화면해설 또는 폐쇄자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.

제32조 중 "필요한"을 "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"으로 하고,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. 장애학생의 학습지원에 관한 사항
- 2. 장애학생의 입학고사를 포함해 입학전형 관리에 관한 사항
- 3. 수업 중 활용하는 영상물의 정보접근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
- 4. 그 밖에 장애학생의 교육활동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1조(편의제공 등) ① ~ ③	제31조(편의제공 등) ① ~ ③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<u> &lt;신 설&gt;</u>	④ 대학의 장은 제1항제4호에
	<u>따른 정보접근 지원을 위하여</u>
	수업 중 활용하는 영상물에 장
	애학생을 위한 화면해설 또는
	폐쇄자막 등 대통령령으로 정
	하는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.
제32조(학칙 등의 작성) 대학의	제32조(학칙 등의 작성)
장은 이 법에서 정하는 장애학	
생의 지원 등에 관하여 <u>필요한</u>	<u>다음 각</u>
내용을 학칙에 규정하여야 한	<u>호에 해당하는</u>
다.	
<u>&lt;신 설&gt;</u>	1. 장애학생의 학습지원에 관한
	<u>사항</u>
<u>&lt;신 설&gt;</u>	2. 장애학생의 입학고사를 포함
	해 입학전형 관리에 관한 사
	<u>ਹੋ</u> -
<u>&lt;신 설&gt;</u>	3. 수업 중 활용하는 영상물의
	정보접근 편의제공에 관한
	<u>사항</u>
<u> &lt;신 설&gt;</u>	4. 그 밖에 장애학생의 교육활동
	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